

2022. 2. 10. 중앙집행위원회 보고자료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목 차

I. 배경	1
II. 임금인상요구안 주요 산출근거	4
1.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
2. 조합 설문조사 결과	7
III.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12

I. 배경

1. 거시경제

■ 세계 경제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가 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여전히 신흥국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공급망 병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출현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글로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급작스러운 수요 회복 등이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의 악재도 존재함.
- 물가의 주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국제유가의 경우, 수요 회복세 확대에 의해 향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
- 세계 경제의 주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경우, 고용·소비 개선 흐름으로 경기 회복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세가 주춤할 우려가 존재함. 추가로 중국과의 G2 갈등 상황 전개 방향에 따라 세계 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 유로존은 경제활동 정상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의 영향으로 성장 개선 흐름은 지속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별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별	세계은행(WB)	OECD	IMF
성장률(%)	5.6%	4.5%	4.4%

발표 시점: 세계은행 21.6.8/ OECD 21.12.1 발표자료 / IMF 22.1.25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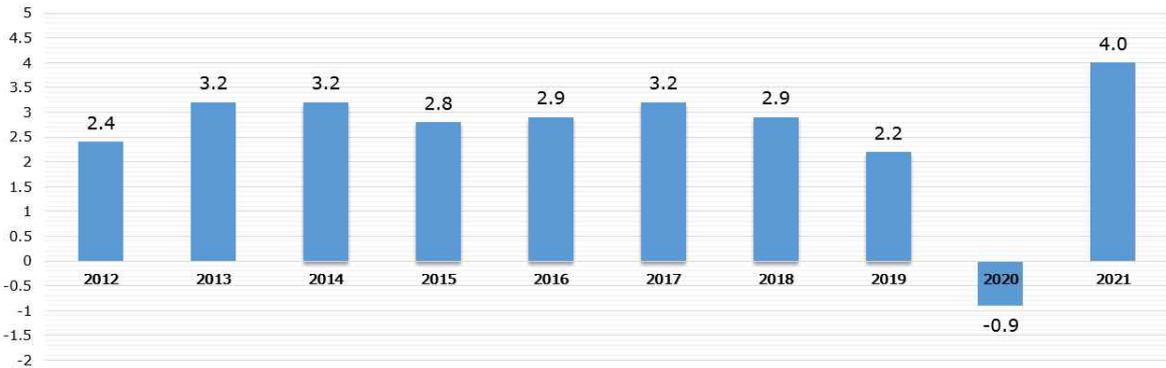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방한 국내경제, 회복 동력 확보가 향후 과제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후반기(3분기) 들어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출현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정 △소비, 수출, 설비

투자 축소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률이 0.3%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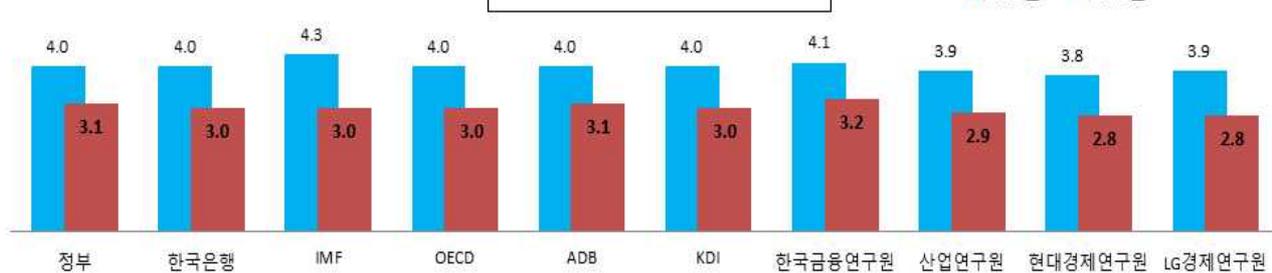
- 4분기 들어 경기 반등 효과로 1.1%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2021년 최종 4.0%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이 각각 3.6%, 9.7%로 반등하였고, 정부소비는 5.5%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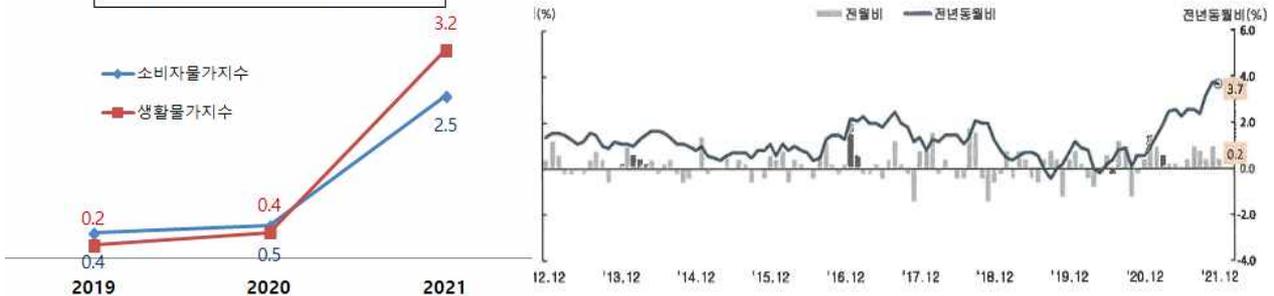
- 2022년은 세계 경제 성장세, 일상회복, 대선·지방선거 정치 상황 등 영향으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G2 경제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장기화 인한 미국 등 주요나라들의 금리 인상, 환율 변동, 코로나19 바이러스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며 약 3% 성장이 예측됨.

주요기관별 한국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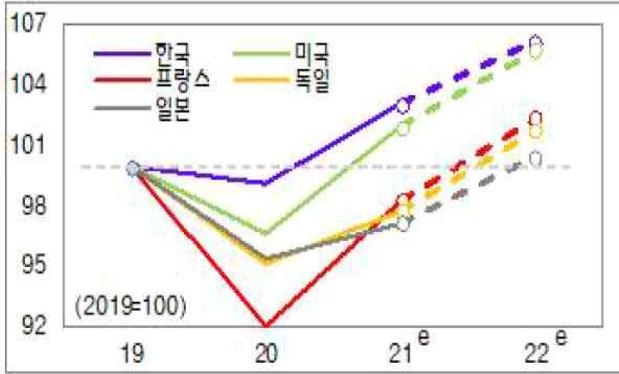
- 물가는 21년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급등, 농·축·수산물 수급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임.

연도별 물가 상승 추이 (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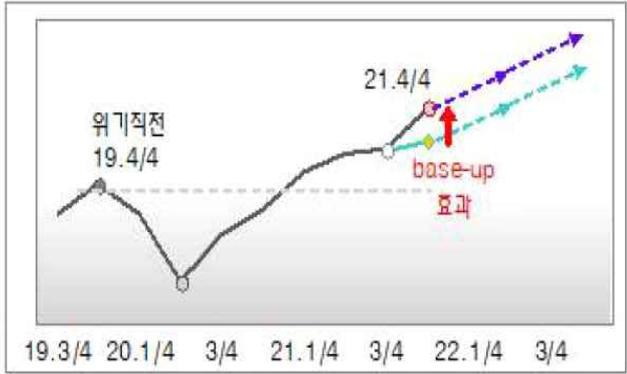


- 수출의 경우, 공급망 확대에 의하여 역대 최대 실적(6,430억 불) 달성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무역 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1조 2,555억 불)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목표로 2021년 8월,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주요 선진국 GDP 회복속도 비교



GDP 성장경로 추이



출처 :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 기획재정부

■ 임금 결정현황

□ 양극화 및 소득 분배 악화 방지를 위한 노동자 임금인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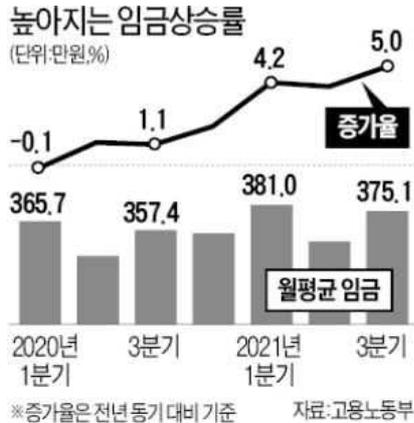
- 지난해 노동 현장 내 노동자 임금 결정현황 역시 개선의 흐름을 보이며, 정상적인 임금 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상 최대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억제된 임금인상 풍토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21년 주요 대기업 임금 결정현황

기업명	임금인상률	비고
LG전자	9%	2011년 이후 최고
SK하이닉스	8%	
현대자동차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삼성전자	7.5%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 3.0%
삼성SDI, 삼성전기	7%	기본급 4.5%, 성과인상 2.5%

출처 : 신문기사 취합

임금 인상 추이 변화



출처: 노동부

- 아울러, 2021년 3분기의 경우 월평균 임금총액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만7,000원) 상승하였음. 코로나 특수를 누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의 사상 최고 증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들어 임금을 7~9% 올린 데 이어 추가 성과급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 명목임금 상승률¹⁾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4.3%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수준(1.5%) 기록하며 소득 양극화 및 분배수치 악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함.

II. 임금인상요구안 주요 산출근거

1.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10년 만에 최대 폭의 물가상승 및 주택비 현실 반영

- 지난해(9월 기준) 물가조사를 시작으로 전체 11개 비목*에 대한 생계비를 산출함.
 -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2022년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은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농수축산물 수급 악화 ▲코로나 거리두기 영향에 따른 변화가 대표적으로 고려됨

1) 명목임금 상승률 :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의 전년대비 상승률

<참고>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II)	4인 가구(III)
2014년 모형 이후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1) 산출 결과

- 생계비 산출 결과 단신 가구는 2,508,376원, 2인 가구는 4,294,179원, 3인 가구는 5,297,270원, 4인 가구(I)는 6,693,436원, 4인 가구(II)는 7,493,152원, 4인 가구(III)는 8,004,728원으로 나타남.

2022년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11개비목 합계	2,302,071	2,199,963	2,251,017	3,761,925	4,618,068	5,814,788	6,450,314	6,837,310
조세 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총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총계	8.4	7.2	7.8	6.0	8.6	9.8	9.6	10.0

-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단신 가구는 7.8%, 2인 가구는 6.0%, 3인 가구는 8.6%, 4인 가구(I)는 9.8%, 4인 가구(II)는 9.6%, 4인 가구(III)는 10%로 나타남.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 비중)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주거보건교육 소계	912,470	912,470	912,470	1,095,185	1,551,255	2,273,682	2,525,134	2,717,697
주거보건교육 소계비율	35.6	37.2	36.4	25.5	29.3	34.0	33.7	34.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조세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	1,654,045	1,537,768	1,595,907	3,198,994	3,746,015	4,419,754	4,968,018	5,287,031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비율	64.4	62.8	63.6	74.5	70.7	66.0	66.3	66.0
2021년 표준생계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별 지출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단신 가구 36.4%, 2인 가구 25.5%, 3인 가구 29.3%, 4인 가구(I) 34.0%, 4인 가구(II) 33.7%, 4인 가구(III) 34.0%임.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2018년	33.8	35.2	34.5	21.3	26.7	25.9	27.8	30.3
2019년	31.9	33.2	32.5	21.5	23.7	28.8	28.9	30.1
2020년	31.5	32.8	32.1	21.0	23.1	28.1	28.9	29.5
2021년	35.6	37.2	36.4	25.5	29.3	34.0	33.7	34.0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합해지면 전체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차이)

2022년 생계비와 2021년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²⁾ (단위 : 원)

생계비 비교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II)	4인가구(III)
통계청 2021년 3/4분기총소득(B)	2,857,941	3,767,082	5,595,207	6,508,184		
노총 표준생계비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2022년 생계비 - B	-349,565	527,097	-297,937	185,252	984,968	1,496,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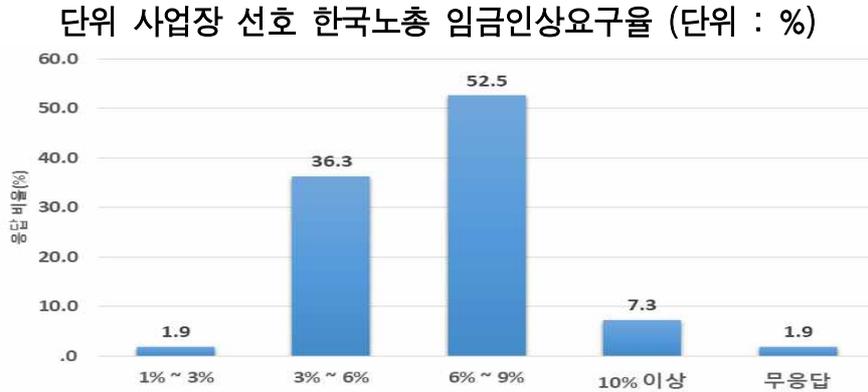
-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단신 가구 -349,565원, 2인 가구 +527,097원, 3인 가구 -297,937원, 4인 가구(I) +185,252원, 4인 가구(II) +984,968원, 4인 가구(III) +1,496,544원으로 나타남.

2. 조합 설문조사 결과

-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임단투 결과 및 평가와 2022년 임금인상 지표 등 지침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조사 기간 : 2021.12.22. ~ 2022.1.21.
*응답 단위노조 수 : 314개

2)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노동자가구

(한국노총 제시 임금인상요구율 선호도)



-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올해 선호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설문에 응답한 314개 노조 가운데 '6% ~ 9% (165개 노조, 52.5%)'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3% ~ 6%(114개 노조, 36.3%)', 10% 이상(23개 노조, 7.3%)' 1% ~ 3%(6개 노조, 1.9%)', 무응답(6개 노조, 1.9%)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 및 타결률)

(2021년 교섭 기간)

- 임단투 교섭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4개월(100개 노조, 31.8%)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2개월(78개 노조, 24.8%), 5~6개월(60개 노조, 19.1%)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의 50% 넘는 노조가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2021년 평균 임금 교섭 기간

문항	응답 수 (개)	비중 (%)
1개월 미만	27	8.7
1~2개월	78	24.8
3~4개월	100	31.8
5~6개월	60	19.1
6개월 이상	38	12.1
무응답	11	3.5
합계	314	100.0

-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임금결정진도율의 경우(22년 2월 현재, 2021년 1~11월) 전체평균 51.0% 사업장에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협약임금인상률의 경우 전체평균 4.3%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3) 통상임금 기준, 1월 ~11월 누계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22년 2월 발표),

(2021년 교섭 특징 및 2022년 교섭 전망)

-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결과 2021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6.6%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섭 이후 임금인상 평균 타결률은 4.3%로 나타났음. (응답 노조수: 요구수준 - 250개, 타결수준 - 245개)
 - * 2020년 단위노조 임금인상요구율 5.8%, 타결률 2.9%
- 이를 기본급 기준의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임금인상 요구액⁴⁾은 153,390원이었으며, 평균 타결액은 102,280원으로 조사됨

	요구수준	타결수준
인상률	6.6% (전년대비 0.6% 상승)	4.3% (전년대비 1.4% 상승)
금액(기본급 기준)	153,390원	102,280원

*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50개, 타결수준 - 245개)

- 2021년 임금인상 요구수준과 타결수준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업규모별, 산업별 임금 격차 및 교섭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치라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2022년 단위노조 임금 교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감,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 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임금인상에 대한 단위노조의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코로나 이후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함.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로의 상생의 임금인상 전략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임금 교섭 현황의 기준임금은 기본급기준임.

(2022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 활동 사안)

2022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 활동 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52 (16.6)	13 (4.2)	20 (6.6)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13 (4.2)	29 (9.4)	30 (9.9)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1 (0.3)	5 (1.6)	7 (2.3)
비정규직 고용개선	7 (2.2)	10 (3.2)	14 (4.6)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11 (3.5)	37 (12.0)	39 (12.8)
임금체계 개선 대응	32 (10.2)	63 (20.4)	41 (13.5)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2 (0.6)	12 (3.9)	3 (1.0)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3 (4.2)	46 (14.9)	60 (19.7)
임금피크제 폐지	14 (4.5)	39 (12.6)	43 (14.1)
임금인상	168 (53.7)	55 (17.8)	47 (15.5)
합계	313 (100.0)	309 (100.0)	304 (100.0)

- 2022년 임단투에서 중점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임금인상(168개 노조, 53.7%)'**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52개 노조, 16.6%)'로 나타남.
- **2순위는 '임금체계 개선 대응(63개 노조, 20.4%)'**을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임금인상(55개 노조, 17.8%)'로 조사됨.
- **3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0개 노조, 15.5%)'**로 나타났으며, '임금인상(47개 노조, 15.5%)'이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2022년 노총 산하조직에서는 올해 임단투에서 **임금과 관련된 항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한 노동자 건강권에도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한국노총 활동 희망 사안)

2022년 한국노총 활동 희망 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90 (29.0)	17 (5.5)	29 (9.6)
노동시간 단축대응	30 (9.7)	43 (14.0)	26 (8.6)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	45 (14.5)	49 (16.0)	34 (11.2)
최저임금 인상	40 (12.9)	29 (9.4)	24 (7.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16 (5.2)	18 (5.9)	16 (5.3)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1 (0.3)	27 (8.8)	28 (9.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2 (3.9)	62 (20.2)	58 (19.1)
여성 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26 (8.4)	5 (1.6)	6 (2.0)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대응	2 (0.6)	10 (3.3)	14 (4.6)
정년연장 대응	48 (15.5)	47 (15.3)	68 (22.4)
합계	310 (100.0)	307 (100.0)	303 (100.0)

- 2022년 한국노총 최우선 희망 활동 사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90개 노조, 29.0%)'를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정년연장 대응(48개 노조, 15.5%)'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2개 노조, 20.2%)' ,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49개 노조, 16.0%)' 순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68개 노조, 22.4%)'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58개 노조, 19.1%)'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노총 산하조직에서는 고용안정과 관련된 활동(총고용 유지, 구조조정 저지 등)을 노총 중점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 임인년 =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해소의 해(년)

- 2022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분배 악화 및 양극화 우려가 심화하고 있음.
- 특히,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금인상 정책이 적극적으 로 도모돼야 함.
-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임금자제 및 삭감을 통한 기 업의 비용절감은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게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종사상지위별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임금인상 정책을 도모하여 경기부양책을 모색해야 함.
-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표준생계비, 임단투 설문결과들을 결합한 기존 임금인상 방식(5.3%) 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인상분(3.2%)을 결합한 8.5% 임 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하는 바임

(연대임금 관련 내용 16페이지 참조)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및 산출근거>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8.5%

정액급여 313,596원 인상 요구

노동자 임금인상분 (5.3%)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1%)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2%)

+

연대임금조성분 (3.2%)

전체 임금인상요구율의 약 1/3수준

1. 임금인상요구율 기본 산출방식

- 올해 한국노총 임금인상률을 산출하는 주요 근거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1%),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2%)과 최근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약 3.0%)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특히, 현재 전체 소득가운데 노동자 가구의 재산소득은 극히 희박하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3%를 달하는 구조에서 여전히 노동자 임금 구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정책이 마련돼야 함.
- 노동자 가구원 3.11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7%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상액의 충족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1) 임금인상요구율 세부 산출근거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원)
(1) 노동자 가구원 수 3.11인 생계비 ¹⁾		5,450,848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3%) ²⁾		4,524,204
(3)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2%) 반영 생계비 ³⁾		4,623,737
(4) 2021년 월평균임금 ⁴⁾ (2021년 1월 ~ 11월 평균)	월 고정임금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932,773
	정액임금	3,359,439
(5) 생계비와 실질임금과의 차액 (17.0% 차이)	생계비-월 고정임금	690,964
	생계비-월 정액임금	590,061
(6)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8.5%
(7) 월임금 획득 목표 (8.5%)	월 고정임금 기준	4,300,075
	월 정액임금 기준	3,673,035
(8) 임금요구 금액 (8.5%)	월 고정임금 기준	367,302
	월 정액임금 기준	313,596

출처:

- 1) 노동자 가구원 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2021년 3/4분기)
- 2)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차지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3) 소비자 물가상승률 :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1년 12월)
- 4) 월평균 임금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 평균(2021년 3/4분

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1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 가구는 4인 가구(1)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 3.11인을 고려한 생계비 : 5,450,848원
 - 5,450,848원 = 3인 가구 생계비(5,297,270원) + {[4인 가구 생계비(6,693,436원) - 3인 가구 생계비(5,297,270원)] × 0.11}
- ▶ 통계청, 2021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전체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3%
-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5,450,848원 × 83% = 4,524,204원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2% 반영
- ▶ 4,342,919원 + (4,342,919원 × 1.0%) = 4,623,737원

생계비 충족률

생계비 획득목표	월 고정임금			월정액임금(상여제외)		
	목표액	차액	인상률	목표액	차액	인상률
100%	4,623,737	690,964	14.9	3,949,500	590,061	14.9
99%	4,577,500	644,727	14.1	3,910,005	550,566	14.1
98%	4,531,262	598,489	13.2	3,870,510	511,071	13.2
97%	4,485,025	552,252	12.3	3,831,015	471,576	12.3
96%	4,438,788	506,015	11.4	3,791,520	432,081	11.4
95%	4,392,550	459,777	10.5	3,752,025	392,586	10.5
94%	4,346,313	413,540	9.5	3,712,530	353,091	9.5
93%	4,300,075	367,302	8.5	3,673,035	313,596	8.5
92%	4,253,838	321,065	7.5	3,633,540	274,101	7.5
91%	4,207,601	274,828	6.5	3,594,045	234,606	6.5
90%	4,161,363	228,590	5.5	3,554,550	195,111	5.5

cf. 최근 3년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의 생계비 충족률
2019년 - 90.3% 2020년 - 90.7% 2021년 - 91.3%

- 2022년 임금인상요구율인 **8.5%**를 기준으로 노총의 표준생계비와 비교하였을 때, **생계비 충족률 93% 수준**으로 나타남.

○ 월 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 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액급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균(원)	3,932,773	3,359,439	573,334	14.6%
획득목표(100%)	4,623,737	3,949,500	674,237	14.6%
차액(원)	690,964	590,061	100,903	14.6%
인상률(%)	17.6	17.6	17.6	

주 : 월 고정임금 총액은 2021년 1월 ~ 10월 임금 누계 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임금상승률과 노총 임금요구율의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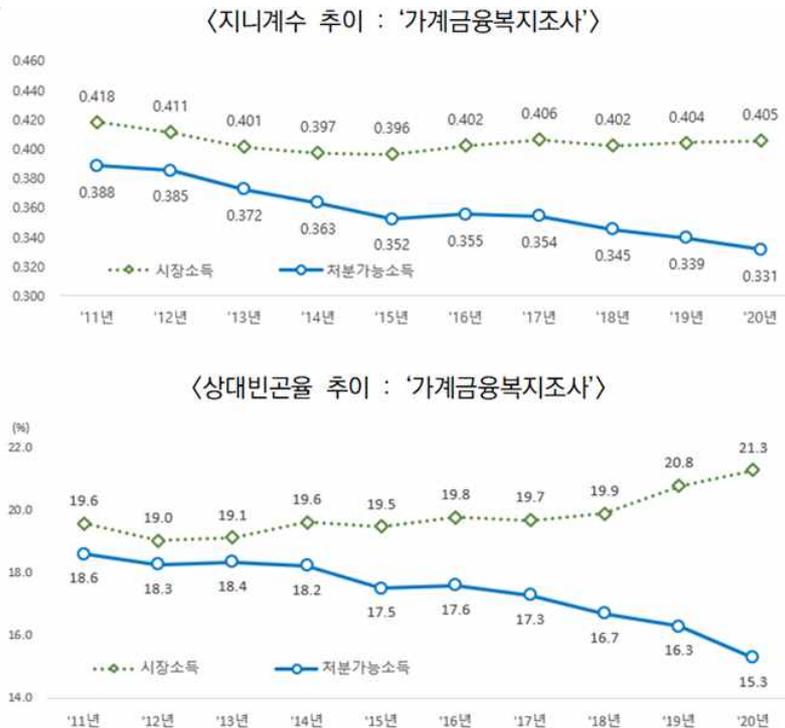
구분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민주노 총 임금요 구율	경총임 금 가이드 라인	협약임 금 인상률
2010	6.4	3.8	2.9	9.5	9.2	동결	-
2011	-0.9	-2.9	4.0	9.4	-	3.5	5.1
2012	5.3	2.0	2.2	9.1	9.3	2.9	4.7
2013	3.8	2.1	1.3	8.1	8.9	-	3.5
2014	2.4	1.1	1.3	8.1	8.0	2.3	4.1
2015	3.3	2.3	0.7	7.8	8.2	1.6	4.0
2016	3.8	2.8	1.0	7.9	7.4	동결	3.3
2017	2.7	1.3	1.9	7.6	7.4	동결	3.6
2018	5.7	4.3	1.4	9.2	7.1	2.0% 내외	4.2
2019	3.5	2.9	0.4	7.5	6.0	미발표	4.0
2020	0.1	-0.5	0.5	7.9 (5.3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 조성분)	미발표		3.2
2021	4.3	2.0	2.5%	6.8 (4.2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 조성분)	월 27만 8,800원 인상		임금총액 3.9 통상임금 4.3

출처: 통계청, 민주노총 등

2) 연대임금 인상요구

○ 임금 불평등·양극화 완화의 일환, 연대임금전략

- 시장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국가복지 확대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평등도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은 최근 5년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다만, 시장소득은 여전히 그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조직노동이 나서서 시장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간, 원청-하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음. 비록, 이러한 활동들이 ‘결과물’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매우 가시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진행형 프로세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그 성과는 조금씩 현장에서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 그동안 단순히 대기업-원청-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당장 중지 내지 오히려 하향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을 매우 높게 인상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장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기업별 노조라

는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임.

- 특히, 그중에서도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까지 더해져서 노동자간 차별의 심화, 격차의 강화가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금이라도 당장 단기과제로서 추진해야 마땅할 것임.

[법정외복지비용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단위: 천원)

기업규모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규모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197.9	211.3	219.4	224.0	234.2
중소규모 (상용근로자 10~299인)	120.0	133.5	137.4	142.1	148.0
대규모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301.2	310.1	319.8	327.8	342.3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 사업장의 법정외복지비용은 상당히 늘어났음에 반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그것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복지를 매개체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대교섭을 실행하는 경우 노동계급 내 연대 강화를 위한 시도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등이 현존하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노동운동의 무기 중 하나로서 연대임금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함.

○ 연대임금전략의 실행방안과 예시

- 연대임금인상의 핵심은 노동계급 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즉, 어느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 방식의 운동이 필요함.
- 임금교섭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장’에 한정된 시야를 두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관련 사내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관심을 두어야 하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장 개혁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함.
- 업종과 지역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산업생태계 공동의 발전과 중장기적 이익을

다수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①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②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노사 모두에게 조세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기업 이윤분배

직전년도 세전
순이익 5% 수준 출연



노동자 생활안정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리사주구입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의료비 지원



조세 혜택

노동자의 경우 장학금, 기념품 등
증여세 비과세 혜택

사용자의 경우 기금 출연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기본적인 임금인상을 8.5%로 요구하되, 일터의 상황과 교섭의 정세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1/3)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서는 노사가 민주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장의 교섭 기본전략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임.

〈연대임금전략의 일환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예시〉

- ① 지역별 동일업종의 임금교섭과정에서 기본임금인상 요구안을 8.5%로 제시
- ② 8.5%의 임금인상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분에 해당하는 3~3.2%(1/3 수준) 정도를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을 요구
- ③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의 협력업체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계획
- ④ 이 과정에서 노사자치의 원칙, 노사동등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의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운영

- 더불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일부 수용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대-중소기업이 서로 평등한 지위로 연합하여 가입하는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업종과 지역을 묶어내어 지역사회 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노동조합이 가져야할 것임.

-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연대임금전략의 발판이 마련되고 노동시장 전체에 노동조합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전략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함.

한국노총의 2030 공동근로복지기금 발전전략 로드맵



〈실례 ①: S화학 공동근로복지기금〉

- 노동조합이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이른 시간 안에 타결되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모범사례라고 가장 많이 회자하고 있는 사례. 2019년 사내 설비제작 협력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 12.7억 원, 협력업체 1.1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총 12.7억 원을 지원받아 26.5억 원의 기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 단체보험 가입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업복지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 행복나눔'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48만 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음. 현재까지 수혜 노동자의 수는 6,698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실례 ②: H엘리베이터 공동근로복지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사례로서, 2016년도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56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법인 설립. 21년까지 원청 59.1억 원, 협력사 6.5억 원 및 정부 지원 25억 원을 통해 총 90.6억원의 기금규모를 갖게 되었음. 애초에 엘리베이터 설치업무의 성격상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이직이 잦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음.
- 자녀학자금, 영유아 보육료 등 노동자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동절 기념품, 휴양콘도 이용료 지원 등 현장노동자의 여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례 ③: K항공우주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 지자체가 최초로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더욱 확대한 최초의 사례. 2019년 설립 이후 원청 10억 원, 20개 협력업체 14억원, 지자체가 12억 원을 출연하고 중앙정부에서 23억 원을 지원하여 총 59억 원의 규모를 조성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노동절 기념품, 체육·문화활동 지원, 재난구호금(1인당 41만원) 지급을 통해 임금·복지격차를 완화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실제 지원한 모범사례로서 향후 여타 지역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연대임금조성의 효과성>

매년 23.4조의 연대임금조성분 확보 !

2020년 피용자 보수총액(잠정) 918.3조원*

2022년 임금인상률 8.5% 적용 시

약 78조 원의 피용자 보수총액 증가

이중 1/3을 연대임금조성분으로 활용할 경우

* 피용자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예시임.

*국민계정 (21.6.30, 한국은행)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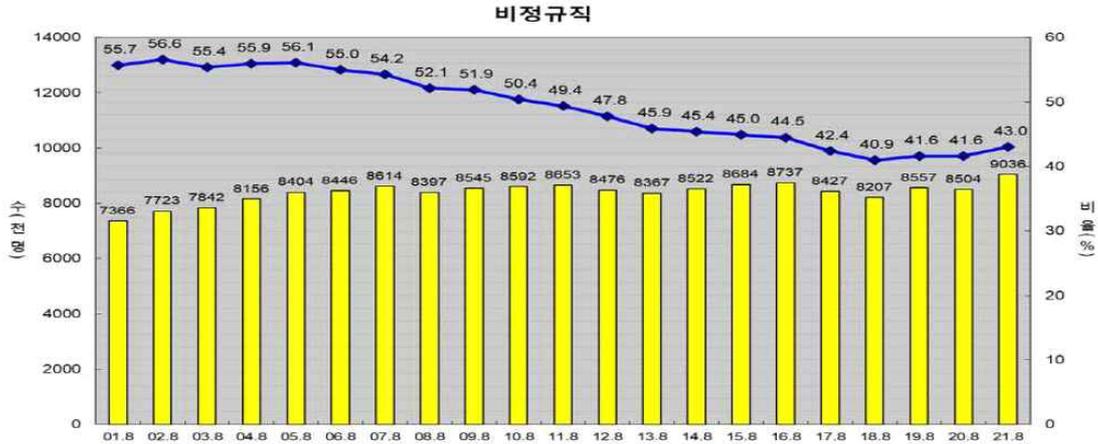
○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불평등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변화

구 분	2019.8	2020.8(A)	2021.8(B)	증감 규모(B-A)
정 규 직	1,200만 명 (58.4%)	1,194만 명 (58.4%)	1,196만 명 (57.0%)	2만 명 ↑
비정규직	856만 명 (41.6%)	850만 명 (41.6%)	904만 명 (43.0%)	54만 명 ↑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는 2021년 8월 기준 904만 명(임금노동자의 43%)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소폭 증가, 2020년은 감소세로 들어서다 2021년에는 54만명이 증가함.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경우, 2021년 173만 원에서 7만 원(3.9%) 인상된 19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비율은 51.5%에서 52.2%로 전년보다 0.7%p 축소됨.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및 노동시간 추이

구 분		2019.8.	2020.8.	2021.8
임 금	정 규 직	100	100	100
	비정규직	51.8%	51.5%	52.2%
노동 시간	정 규 직	42.9시간	42.5시간	42.3시간
	비정규직	35.3시간	34.2시간	33.9시간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시간의 경우 2021년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2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3시간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의 기대효과
 -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 ▶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 ▶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사업장 수준 임금 하한선 설정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 내 임금 하한선 설정
-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 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 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1) 202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배)	4.35	4.13	3.75	3.59	3.64	3.70
저임금계층 비율 (%)	22.6	21.5	15.7	15.8	17.4	16.1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추세는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등 세계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2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 ▶ 2022년 월 정액임금 인상 요구액 313,596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액으로 제시함

○ 산출근거

- ▶ 비정규직 임금 180만 원(정규직 대비 52.2%)
- ▶ 2022년도 한국노총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367,302원

○ 인상 효과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
-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800,000원(52.2%)에서 313,596원을 확보하는 경우, 2,113,596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의 임금 수준은 57.5%로 낮아짐.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대효과 (단위 : 원, %)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규직(A) (원)	3,440,000	3,673,035
비정규직(B) (원)	1,800,000	2,113,596
비정규직임금비율(B/A) (%)	52.2	57.5

4) 202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2021년도 전체 통계가 발표되고,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22년 5~6월 중 양대노총 및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구 분	시 간 급(원)	일 급(원)	인 상 륜(%)
98.9-99.8	1,525	12,200	2.7
99.9-00.8	1,600	12,800	4.9
00.9-01.8	1,865	14,920	16.5
01.9-02.8	2,100	16,800	12.6
02.9-03.8	2,275	18,200	8.3
03.9-04.8	2,510	20,080	10.3
04.9-05.8	2,840	22,720	13.1
05.9-06.12	3,100	24,800	9.2
07.1-07.12	3,480	27,840	12.3
08.1-08.12	3,770	30,160	8.3
09.1-09.12	4,000	32,000	6.1
10.1-10.12	4,110	32,880	2.75
11.1-11.12	4,320	34,560	5.1
12.1-12.12	4,580	36,640	6.0
13.1-13.12	4,860	38,880	6.1
14.1-14.12	5,210	41,680	7.2
15.1-15.12	5,580	44,640	7.1
16.1-16.12	6,030	48,240	8.1
17.1-17.12	6,470	51,760	7.3
18.1-18.12	7,530	60,240	16.4
19.1-19.12	8,350	66,800	10.9
20.1-20.12	8,590	68,720	2.87
21.1-21.12	8,720	69,760	1.5
22.1-22.12	9,160	73,280	5.1